

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2162호
- 발 의 자 : 이병도 의원(찬성자 19명)
- 발의일자 : 2021년 2월 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2월 9일

2. 제안이유

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이 2018년 개정에 따라, ‘취약예술계층’을 본 조례안에서 인지하고 이들의 복지 증진과 문화 예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근거를 마련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.

나.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 7조제5호 신설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과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5.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“취약예술계층”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.
-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2 “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”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창작준비금 등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지원 기준·방식을 개선하고자 2018년 10월 신설되었음.

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

제2조의2(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[예술인이나 그 부모·배우자 또는 제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가구원”이라 한다)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정부는 2011년 「예술인 복지법」을 만들고 지난해 5월 ‘예술인고용보험제도’를 도입하는 등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생고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바, 안 제2조제2호 규정을 통해 위기상황을 넘어 거의 절멸적 상황에 내몰렸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- 지난해 서울시는 예술인의 긴급지원을 하고자 총 4번의 추경을 통해 총 8개 사업 275억 9백만원을 편성하는 등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,

<2020년 추경으로 편성된 예술가 지원 사업 현황>

연번	부서	사업명	예산
합계			275억 9백만원
1	문화정책과	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	5억원
2		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	45억원
3	문화예술과	공연업 긴급 희생 지원	50억원
4		코로나 관련 대학로 공연장 방역	1억2천만원
5	디자인정책과	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	133억 8천9백만원
6		서울디자인산업 지원	20억원
7	박물관과	신진미술인 지원을 통한 일상전시	15억원
8	서울도서관	지역 출판·서점 지원	5억원

언론보도에서는¹⁾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예술가, 예술단체, 공연장, 공연기획사 등의 실질적인 조사나 검토 없이 지원이 이루어져 사업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, 기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가와 예술단체가 다시 지원을 받는 등 예술계 병폐가 예술가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,

현실을 무시한 정책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이 있었으므로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안 제7조제5호에 신설하고자 하는 취약예술 계층의 대상이나 사업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, 코로나19

1) '코로나19 예술인 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이라는 우려, YBS뉴스통신 2020.4.29.(<http://www.ybsn.tv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1382>)

이후 예술계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단기적, 중기적, 장기적으로 세분화된 정책 마련과 예술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.

- 다만, 집행부에서 “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”의 정의가 상위법인 「예술인 복지법」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, 동사업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재정사업일 경우 법적 근거의 부재, 사전 중앙부처(보건복지부)와의 협의가 누락된 상황 등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수정의견이 아래와 같이 있었음.

<안 제7조 수정안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)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7조(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	제7조(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5. <u>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</u>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. 다만,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5.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. 다만,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5. (생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	6. (개정안 제6호와 같음)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지영	02-2180-8115

의안번호
2162

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주요내용	이병도 의원 외 19명	2021. 2. 5.	문화체육관광위원회
추진경과	○ 2021. 2. 5. 조례안 발의(이병도 의원 대표발의)		
부 서 검 토 의 견	원안가결() / 수정가결 (○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<p>[종합의견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조 취약예술계층 신설 규정은 상위법에 재정되어 있는 법적 정의를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적절함 ○ ‘제7조(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등) 5.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’ 규정중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상위법 근거 부재, 사회보장제도 신설시 중앙부처(보건복지부) 협의절차 누락, 재정부담비용 추계 부재 등의 사유로 삭제하고 법적근거가 명확한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으로 한정함이 타당 <p>- 제7조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5.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→ 5.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</p> <p>[세부 검토 의견]</p> <p>① [제2조 ‘취약예술계층’ 신설] 관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조 취약예술계층 신설 관련 : 취약예술계층의 정의가 법적성격이 유사한 「예술인 복지법 시행령」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에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음.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p>◆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2</p> <p>제2조의2(취약예술계층에 대한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예술계층[예술인이나 그 부모·배우자 또는 제3조의 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가구원”이라 한다)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</p> </div>		

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2.>

◆ **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**

제2조(취약예술계층의 기준)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, 다음의 기준을 만족한 자를 말한다.

1. 신청인 및 신청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)이 기준 중위소득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)의 120%이하인 경우

② [제7조 ‘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’ 신설] 관련

- 동 조례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으로 <5.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>을 신설하면서 사업의 대상 및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였음
- ‘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사업’의 정의가 상위법으로 볼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및 시행령에 부재함
- 또한 동 사업이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을 갖는 대규모 재정사업일 경우 법적근거의 부재, 사전 중앙부처(보건복지부)와의 협의가 누락된 상황이며 사업의 범위를 규칙으로 위임했다는 사유로 비용 추계가 누락되어 있어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임

◆ **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**
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, 기존 제도와의 관계,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,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4. 7.>

- ◆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(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)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, 지방교부세를 감액, 9.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·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·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: 협의·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·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)

대응방안	○ 세부 검토내용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방문 설명				
상임위 처리결과	○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				
향후계획	○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				
담당부서	문화예술과	팀장	홍우석(☎2133-2552)	담당	김유빈(☎2133-2553)